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본 가정노동 지원*

The Needs of Support for Household Labor: Perspective of Women's Policy*

카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부교수 정 영 금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nsumer & Housing Studies
Associate Professor : Young-Keum,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Professor : Sook-Jae, M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dealing with work-family conflict of employed women, and to investigate the needs and the methods of support for household labor. Especi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ims to be reflected in women's policy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For these purposes, 477 married women those being employed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having nuclear family were selected. Statistics were frequencies, means, percentile, and two-way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mployed mother's housework time is 5 hours 16 minutes on a weekday and 9 hours 32 minutes on Sunday with the exception of market work time. And 84.5% of total housework was performed by housewife. Thus they take chage of work burden (market work and housework), and make a difficulties of cooking and family care. Seconds, the highest needs of support was the change of thought on division of labor, responsibility on housework, and status of women. The next were the needs of the social organization (flex-time, a special holiday for woman workers, home-based work) and the public institution (day-care center, school feeding). Thirds, contributing factors to the needs of support were housewife's age and occupation. So, this two factors were crossed in order to analyze family type by factors.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97 자유공모과제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부터이다(권영자, 1995). 과거에 부녀복지라는 명칭하에서 이루어졌던 여성에 대한 배려는 이 시기부터 전문기관과 국가기구에서 전담함으로써 여성부문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여성정책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정책, 이것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체제로서의 정책 등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여성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가정학에서는 여성의 가정노동에 관심을 두어, 가정노동시간과 가치평가, 가정노동의 가치인정 방안, 가정노동의 분담과 경감 방안 등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는 주부들이 전담하고 있는 가정노동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가정노동 관련연구도 정책으로 확대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즉, 여성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에서 간과된 가정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양 측면을 서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1996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48.7%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0.6%에 해당하는 약 843만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일시적 노동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육아휴직이나 탁아서비스 등 취업 지원체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들은 미혼기에 취업을 하다가 결혼이나 출산과 더불어 대부분 퇴직하고 결혼 및 육아 이후에는 재취업하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여성취업의 비연속성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가사부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직부제도 역시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혼퇴직제 등의 제도적인 장애는 차츰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여성을 여전

히 부차적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보조적인 업무로 배치하며 훈련이나 승진면에서 주변에 머물게 하는 고용관행 및 여성차별 등은 여성의 장기근속의욕을 약화시킨다. 또한 중신고용, 연공서열, 장시간 노동이 노동시장의 기간을 이루는 한국적 고용관행에서 가정노동과 직장노동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가정노동을 진단할 주부를 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취업을 계속하려면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취업주부들이 시장노동이 끝나자마자 가정으로 돌아와 가정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교대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알 수 있다.

이제까지 가정노동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서 가족원들이 분담하도록 하거나 사회화시키고, 공적으로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고용촉진방안의 일환으로 몇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는 것이 현대화되어도 가정만은 예전과 같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문화지체현상이 지속되고, 가정노동 해결방안도 총체적으로 모아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주부들만이 가정노동의 주담당자로서 남아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녀양육기간이 짧아지는 근간의 추세로 본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으로 가정노동과 시장노동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또 현재 취업의사가 없는 주부들에게도 가정노동과 시장노동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이 환경은 가족원들이 가정노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가정과 사회가 가정노동의 수행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한편, 가정노동의 수행이나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은 실제로 노동을 수행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까지 주부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어떠한 문제이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수혜자나 참여자의 입장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간과한 정책이나 노력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차원(공적, 사적)에서 제시된 가정노동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부들의 요구도를 조사하

고, 이를 기초로 주부들이 원하는 지원방안의 정도를 총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가정노동 담당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각 지원방안의 효과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맞춘 차후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정책과 가정노동

여성정책이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이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갖는 정책으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규정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7). 여성정책은 '평등', '발전', '평화' 등 3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며(한국여성개발원, 1996). 이는 궁극적으로 '남녀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여성정책은 크게 세분야로 구분되어, 첫째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에는 가족내의 평등을 위한 정책과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보육관련 정책들과 여성직업훈련의 확대정책을 포함한다. 셋째 여성의 복지증진정책에는 여성의 고유기능인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과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포함된다(권영자, 1995)

여성정책에서 가정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연결지어서 설명한다.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정노동의 무급 특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가정노동과 여성의 지위를 연결시키면서 가정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대부분 주부)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지향점을 남녀평등에 두는 여성정책에서는 가정노동이나 가정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인해 불평등한 구조에 있음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확대를 위

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무보수 가정노동의 가치는 평가되어야 마땅하고,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신념체계가 평등한 남녀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제 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서는 여성의 가정노동가치의 평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화하였으며(제 26조), 영유아보육(제 23조)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제 24조)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평등한 가족관계 및 남녀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임을 인식한데서 출발한다(문숙재·윤소영, 1997).

결국, 여성정책에서는 주부의 가정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유급노동력의 참여를 통해 여성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경우에 유급노동력에의 참여는 가정노동의 수행과 더불어 이중부담을 야기시키므로 남성취업자의 동등한 경쟁에서 불리하며, 이는 결국 여성의 능력부족으로 오인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여성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이 기획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만 전념하는 남성과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은 동등한 환경에서의 경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이 직업노동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노동문제의 해결과 병행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취업주부들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이 두 가지 일을 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의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2. 취업주부의 노동실태

1) 취업노동 실태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1996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7%이며 기혼여성의 참가율은 48.5%이나, 숫자상으로 볼 때 기혼여성의 수는 미혼여성보다 훨씬 많은 6,380천명에 달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 농업부문에 참여하던 여성의 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송 외, 1996). 가족노동적 성격이 강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가족의 소득을 보충하거나 중산층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사회참여나 자아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은 직업별 분포로 볼 때 전체의 69.6%가 서비스근로자(34.9%),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17.2%), 그리고 단순노무직 근로자(17.5%)에 편중되어 있어(혼인상태 및 직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중 유배자 기준, 통계청, 1996) 상당수의 여성들이 저소득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는 지난 1996년 기준으로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59.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한국여성개발원, 1997), 기혼여성들의 취업여건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여성의 시장노동참가율은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하다(〈표 2〉 참조). 특히 25-29세 연령집단과 30-34세 연령집단의 참가율은 각각 47.8%와 47.5%로서, 70-80%를 상회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과 대조를 이루며, 심지어 60%에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의 참가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여성의 직장내 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20-30대 여성의 약 60% 정도가 대체 양육자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 결과(이현송 외, 1996)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취업노동에 있어서 자녀를 포함한 가정활동이 가장 큰 장애요소를 알 수 있다.

〈표 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구 분	경제활동인구(천명)		경제활동참가율(%)		전 체(%)	
	기혼	미혼	기혼	미혼		
1985	여자	4,391	1,584	41.0	41.7	41.9
	남자	7,683	1,931	86.8	43.5	72.3
1990	여자	5,602	1,908	47.2	46.5	47.0
	남자	8,910	2,121	88.4	43.7	74.0
1995	여자	6,194	2,170	47.6	50.4	48.3
	남자	9,914	2,520	88.8	49.6	76.5
1996	여자	6,380	2,187	48.5	49.5	48.7
	남자	10,012	2,608	88.4	49.5	7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97 여성통계연보.

〈표 2〉 25-34세 연령층 여성의 시장노동참가율 국제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싱가폴	일본	대만
	1995	2010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25-29세	47.8	57.3	74.7	71.7	82.1	81.3	77.6	64.3	62.7
30-34세	47.5	56.2	73.5	69.7	79.1	85.2	64.3	52.7	56.4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1995.

2) 가정노동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들의 취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들은 취업노동외에 가정노동까지 책임지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의 가정노동시간은 <표 3>과 같이 3~5.5시간에 달한다. 연구마다 조사기준이 달라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평일을 기준으로 할 때 8~9시간 이상의 취업노동에 덧붙여 많은 가정일을 함으로써 하루의 노동시간이 약 12~15시간에 이르고 있다. 휴일에는 평일에 하지 못한 일까지 해야 하며, 특히 가정노동 가운데 식생활준비와 가족원 돌보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여성의 시장노동참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미국이나 일본 취업여성의 노동시간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취업주부들이 수입노동시간은 많고 가정노동시간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러나 수면, 휴식, 식사 등의 생리적 시간은 미국이 8시간 28분, 일본이 9시간 23분인데 반해, 한국의 주부들은 7시간 26분에 불과했다(두경자, 1992). 따라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취업여성들이 보다 편

안한 생활을 하는 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른 두나라 여성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충분한 생리적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가정노동에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취업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3. 가정노동의 지원실태

1) 가정내 해결을 통한 지원

취업주부의 가정노동에 대한 지원요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원, 특히 남편과의 노동분담을 통해서 충족된다. 이때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을 가족원이 분담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개별 가정의 자율성에 근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윤소영, 1998).

그러나 이기영 외(199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주부가정 남편들의 가정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21분에 불과하며 일요일에만 2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주부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지

<표 3> 취업 주부의 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간, 분)

분 류		1993*			1994**		1995**	
		전일제 + 시간제(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가정노동시간	식생활	1.20	1.26	1.52	1.48	2.48	1.27	1.51
	주생활	.29	.33	.50	1.05	1.30	0.26	0.50
	의생활	.15	.25	.39	0.36	1.12	0.14	0.39
	가족돌보기	1.05	1.22	1.11	1.30	3.36	1.06	1.32
	경영, 장보기	.20	.49	.49	0.36	0.54	0.07	0.31
	합 계	3.28 (3.03)	4.35 (4.09)	5.21 (5.17)	5.36	10.06	3.20	5.23
수입노동시간		8.20 (10.00)	5.32 (6.53)	0.41 (0.54)	9.24	2.30	9.02	0.24
전체노동시간		11.48 (13.03)	10.07 (11.02)	6.02 (6.11)	15.00	12.36	12.22	5.47

* 이기영 외 (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 김혜연 (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 이기영 외 (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표 4〉 취업주부의 노동시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단위 : 시간, 분)

		한국*		일본*		미국**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휴일
가정 노동 시간	식생활	1.27	1.51	1.36	2.04	
	주생활	0.26	0.50	0.09	0.50	
	의생활	0.14	0.39	0.26	0.57	
	가족돌보기	1.06	1.32	1.03	1.29	
	경영, 장보기	0.07	0.31	0.15	1.02	
	합계	3.20	5.23	3.30	6.21	3.53
수입노동시간		9.02	0.21	8.42	0.17	6.10
전체노동시간		12.22	5.47	12.12	6.38	10.03

* 이기영 외 (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 DeMeis, D. 외 (1996), "Supermours of the nineties".

는 않았으나 최수선(1995), 홍윤정(1996)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가정의 남편들은 평일 약 20분~1시간 16분 정도의 가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들의 가정노동시간은 자신의 직장노동시간, 가계총소득, 출퇴근시간 융통성 등 자신의 상황이나(홍윤정, 1996) 남편의 성역할태도(최수선, 1995)에만 영향을 받을 뿐 부인의 취업유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부인이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남편이 가정노동을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

또한 가정노동시간을 가족생활주기별로 구분한 권혜연(1996)의 연구를 보면, 부인의 가정노동시간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남편의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노동부담이 많은 단계의 가정노동분담률이 신혼기의 분담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가정노동의 양이 많건 적건 간에 남편이 부담하는 몫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록 성별에 따른 역할구분이 고착됨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의 가정노동을 가정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가정기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1991)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가구주 단독 취업가구에 비해 오히려 가정기기의 보유율이 낮았으며, 가정기기의 보유는 취업여부보다 오히려 소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았다(조성은, 문숙재, 1991). 이는 취업주부

들이 가정기기의 활용을 통해서도 가정노동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시장환경

우리 나라는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가계의 총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37.5%에서 1995년 28.8%로 감소되었으나 식료품비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7.5%에서 33.6%로 증가되었다(도시가계연보, 1994-1996). 이에 따라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1985년 4.1조원에서 95년 20조원으로 크게 증대되었다(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 1996). 이것은 생활유형의 변화에 기인하겠으나 흑자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외식산업을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취업주부가정은 비취업주부가정보다 가계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를 기초로 한 연구(양세정 외, 1992)에 따르면, 취업주부가정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노동으로 인해 지출이 감소되어 식료품, 외식,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특히 적었다. 제미경(1993)에 의하면, 외식, 배달음식, 세탁, 옷수선, 파출부 등에 지불되는 전체 시간절약서비스 지출비용은 전업주부 또는 취업주부와 상관없이 직업지위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문직을 가진 주부에 비

해 비전문직을 가진 주부나 전업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비용이 적었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은 지출비용이 적었다.

따라서 가정노동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환경을 이용하는 집단은 모든 취업주부이기 보다는 직업지위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취업주부의 대부분이 소득획득을 위하여 일하는 저소득집단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주부들이 가정노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장대체제를 사용할 여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3) 사회의식의 개선

산업화이전에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나 자녀와 함께 가정이라는 공동의 장소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줄 기회가 많았다. 물론 여성이 자녀양육에 대한 일상의 직접적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지만 아버지들이 가정생활에 많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은 시장체제하에서 크게 변화하여 가정노동의 참여는 비남성적이고 자연스럽게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전체적인 인식으로 확산되어 타인의 눈은 남성이 가정노동에 참여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 평등주의적 사고를 지닌 남성들조차 어른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가정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의 위신을 지키고 아내가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공미혜, 1994).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노동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지 않거나 기피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과 병행하여 실제로 남성들이 느끼는 참여장애요인은 다양하다. 조미환(1996)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이 가정노동에 많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로 시간부족이나 피곤함과 같은 상황장애가 1순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사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잘 못해서 아내가 다시 해야하는 기술장애가 두 번째 이유였다. 세 번째는 단조로우며 보람이 없다는 비선호장애, 네 번째는 체면이 손상되고

여성의 일이라는 관념장애가 그 이유였다.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지각하는 장애수준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장애요인의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본다면, 기혼남성들은 여러 가지의 내적·외적 이유로 인해 가정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아내가 취업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다.

4) 사회제도의 개선

여성의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유산/조산/사산휴가, 수유시간, 육아휴직제도, 보육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산후 60일의 유급휴가, 육아시간, 임신중의 경미한 근로로의 전환, 시간외 근로 금지, 생리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89년에 모성보호규정에 대한 별칙이 다소 강화되어 산전산후 휴가기간동안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금지규정이나 수유시간 위반시의 벌칙 등이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1987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에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 제 3장). 1995년에는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강제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1994년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에서는 월 1일의 태아검진 휴일제도, 출산휴가의 산후 6주를 포함한 12주로의 상향조정, 유산휴가의 법제화, 남성근로자에게 7일 이내의 출산간호휴가 부여, 육아휴직제를 남녀공통으로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급휴가의 비용을 사용자부담에서 사회부담이나 국가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박숙자, 1995).

실제로 1993년에 실시한 조사(강남식 외 1993; 정혜선, 1994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산전산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78.9%, '사용하지 못한다'가 5.3%, '해당없음'이 6.4%였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은 25.5%를 제외하여 '단체협약대로 사용한다'가 21.3%, '단체보다 짧게 사용한다'가 12.8%,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다'가 33.7%였다. 또 모성보호 관련제도의 실시율과 사용률에 관한 조사결과(박정은 외, 1994)에 따르면, 산전산후휴가는 실시율과 사용률이 모두 90%를 상회하는데 비해 유산 및 조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실시율이 50%대로 떨어지며 사용률은 각각 3.3%와 5.8%에 불과해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5) 공공시설

취업주부의 가정노동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시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직장보육정책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육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실태조사결과(양승주, 1996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96년 상반기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07개이며 이 중 순수 사업장은 48개에 불과하여 보육아동수는 약 1,5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사업장 329개사 중 5.4%인 18개사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설치율이 낮아 30대 그룹의 623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만이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는 1994년(김중대, 1996에서 재인용) 당시 32개소 1,000여명의 아동이 보육되어 전체 영유아보육시설의 0.5%에 불과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처럼 직장보육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며 보육교사 인건비보조와 육아휴직장려금 등의 사업을 펴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수가 적은 사업장이 많고 대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인력확보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사업주에게 운영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양승주, 1996). 이것은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육대상아동을 가진 여성인력의 수가 적고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게 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보육시설설치로 인해 이직 및 결근, 조퇴 등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공시설이 취업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육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의의를 두고 시작한 학교급식은 영양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주부들의 노동시간을 감소시켜 취업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학교급식은 제 14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서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7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199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학교 학생의 67.9%가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7세부터 18세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스웨덴이나 1994년 5월 현재 급식률 94.9%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임선희, 1995), 우리나라의 급식수준은 물론 취업주부를 위한 사회환경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가정노동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취업노동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인 주부로 한정하였다. 가정노동의 지원은 모든 주부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과 일의 이중노동부담으로 인한 가사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대상의 범위를 친척이나 가족원 이외의 조력자가 없는 핵가족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병행된 2단계로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11월 10일~15일에 실시된 예비조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12월 13일~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내용과 척도의 구성은 <표 5>와 같다. 설문지는 총 500부 배포되어, 이 가운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477부가

<표 5> 1차조사의 질문내용 및 척도

	내 용	척도의 구성
일반적인 사항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정노동시간 취업노동시간	(평일×6+휴일)/7 (평일×5+토요일+일요일)/7
가정노동에서의 어려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 돌보기, 가정 경영 등 5개 영역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각 영역의 어려움을 3-15점 사이에, 전체 영역의 어려움은 15-75점 사이에 위치함.
지원요구	가정내 해결, 시장상품 및 서비스 이용, 사회제도 마련, 공공시설 확충, 사회전반의 의식전환 등 5개 영역(각 영역당 5문항)	10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예비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요구도가 높아 영역별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 각 영역별 요구도는 5-50점 사이에, 전체 요구도는 25-50점 사이에 위치함.

<표 6> 2차조사의 사례분류

주부직업 막내 자녀연령	단순노무· 고용판매직	자영업상인· 자영기술자	사무직, 전문기술· 경영관리직
6세이하	1	1	3
7세이상	2	3	3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및 ANOVA 등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2차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부 개인의 면접과정으로 이루어졌다¹⁾. 13명의 주부가 면접조사되었고, 각 사례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류된 가정유형분류(막내자녀연령과 주부의 직업을 교차분류함)에 따라 선택되었다. 사례별로 전체 면접시간은 약 1시간-2시간에 이르며, 면접내용은 조사대상자의 합의하에 모두 녹음한 후에 재생시켜 자료화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기초자료의 분석

1) 일반적 특성 및 가정노동시간

설문에 응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7)

범주변수	구 분	빈도 (%)
주부학력	중졸 이하	65(13.2)
	고졸	223(45.3)
	전문대졸 이상	204(41.5)
주부직업	단순노무·고용판매기술직	166(33.7)
	자영업자	124(25.2)
	사무직	86(17.5)
	전문기술·경영관리직	116(23.6)
주부연령(세)	20대	53(10.8)
	30대	235(47.8)
	40대	184(37.4)
	50대 이상	20(4.1)
막내자녀연령(세)	만 6세 이하	201(40.9)
	만 7세 이상	291(59.1)
주부소득(천원)	100만원 미만	133(27.0)
	100~150만원	220(44.7)
	151만원 이상	139(28.3)
기타변수	평 균	표준편차
가정소득(천원)	3309.57	1131.00
가정자산(천원)	169020.00	207389.00
1일가정노동시간(분)	391.13	161.70
1일취업노동시간(분)	452.44	130.91

1) 본 조사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충자료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1차조사의 477명이다. 특별히 면접조사까지 실시한 이유는 1차조사 결과 몇가지 중요한 변수를 기초로 가정유형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표 8〉 가정노동시간 및 담당률

영역	평일 하루 평균	휴일 하루 평균	주부담당비율(%)
식생활 부문	약 1시간 48분	약 2시간 34분	89.7
의생활 부문	약 59분	약 1시간 32분	86.9
주생활 부문	약 56분	약 1시간 34분	83.8
가족 돌보기	약 1시간 19분	약 1시간 23분	80.4
가정경영 부문	약 54분	약 1시간 21분	81.8
가정노동 전체	약 6시간	약 9시간 32분	84.5

취업주부들의 가정노동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5시간 56분이었고 휴일은 하루 평균 9시간 32분에 달하였다(〈표 8〉 참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중복생산(joint production)으로 인하여 가정노동시간이 다소 길게 조사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사대상 가정의 약 40% 정도가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점과 조력자가 없는 가정임을 고려한다면 장시간의 가정노동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식생활 부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다음은 가족돌보기 시간이 길었다. 기타의 활동들도 대부분 1시간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노동을 주부가 담당하는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식생활/의생활/주생활/가족돌보기/가정경영 영역에서 각각 89.7%, 86.9%, 83.8%, 80.4%, 81.8%를 주부가 담당하고 있어 취업주부들은 전체 가정일의 84.5%를 취업노동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주부는 가정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일을 거의 대부분 주부가 수행하고 있었다.

2) 가정노동 수행상의 어려움

취업주부들이 가정노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며 어떤 일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조사 대상 주부들은 가정노동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영역별로는 식생활 부문에서 가장 어려움이 크다. 이것은 가정노동 중 식생활 부문이 차지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이 부문의 담당비율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세탁이나 청소 등은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식생활 부문은 규칙적으로

〈표 9〉 가정노동 수행시 어려움 정도

영역	평균
식생활	3.64
의생활	3.02
주생활	3.26
가족관리	3.24
가정경영	3.22
가정노동 전체	3.31

*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5점 범위로 환산함.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이런 측면은 가족관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문은 가족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다소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 부문에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생활, 가족관리, 가정경영 부문에서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약간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어려움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의생활부문이었다.

가정노동의 영역별로 살펴본 어려움 정도는 각 주부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표 10〉 참조²⁾). 가족돌보기 측면에서 20-30대 주부들은 40-50대 주부들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는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부가 가족돌보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결국 가정노동 중 가족돌보기 영역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로 인해 여성의

2) 이 분석에서 가족수나 가정의 자산, 가정노동시간 등의 변수가 제외된 것은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표 10> 가정환경적 변수에 따른 어려움 정도

변인	구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가정경영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주부의 연령	20대	10.78		9.87		10.34		10.71	A	9.87		51.93	
	30대	11.08		9.05		9.84		10.16	AB	9.54		49.81	
	40대	10.75		8.87		9.56		9.01	BC	9.83		47.95	
	50대 이상	10.71		9.05		9.70		8.43	C	9.40		47.36	
	F	0.64		2.14		1.48		7.46***		0.51		2.58	
막내 자녀 연령	만 6세 이하	10.95		9.25		9.85		10.25		9.52		50.06	
	만 7세 이상	10.89		8.94		9.74		9.37		9.79		48.71	
	t	0.06		1.76		0.21		9.81**		1.09		2.16	
주부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63		8.54	B	9.34	B	8.75	B	10.08		47.79	B
	고졸	10.74		8.66	B	9.62	AB	9.78	A	9.65		48.40	AB
	전문대졸 이상	11.20		9.69	A	10.10	A	9.97	A	9.58		50.64	A
	F	1.98		10.76***		3.28*		3.70*		0.82		3.50*	
주부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61		8.32	B	9.29	B	9.40		9.42		47.35	B
	100 - 150만원	11.13		9.42	A	10.05	A	9.92		9.73		50.22	A
	151만원 이상	10.90		9.24	A	9.84	A	9.76		9.84		49.67	A
	F	1.58		8.28***		4.08*		1.16		0.86		3.57*	
주부의 직업	단순노무직 및 고용판매직	10.78	AB	8.76	B	9.66		9.72		9.56	AB	48.77	
	자영상인 및 자영기술자	10.56	B	8.67	B	9.57		9.32		10.21	A	48.18	
	사무직	10.99	AB	9.34	AB	10.13		9.84		8.97	B	49.61	
	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	11.45	A	9.75	A	9.94		10.08		9.81	A	50.89	
	F	2.50		5.10**		1.17		1.23		3.71*		1.66	

취업경력이 비연속적으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의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영역에서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며, 각 영역별로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의 주부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그 이하의 집단보다 의생활, 주생활, 전체 가정노동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평균소득이 높은 취업주부들이 다른 취업주부들보다 근무시간 이외의 활동이

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투자로 인해 중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 집단의 취업주부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이로 인해 남녀평등적 가치관을 갖게 됨으로서, 가정노동의 전담을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의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 주부가 의생활 측면에서 타집단의 주부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자영상인 및 자영기술자 집단과 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 집단은 가정경영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영상인의 경우에는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분리되어 있더라도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가정경영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2.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

1) 변인별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

취업주부의 가정노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요구도는 영역별 요구도와 전체 요구도로 구분하여 <표 11>에 제시되었다. 영역별로는 사회전반의 의식전환에 대한 요구도가 8.19로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제도 마련과 공공시설 확충이 각각 7.96과 7.9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가정내 해결의 방법과 시장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한 방법은 각각 6.66과 5.9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노동을 지원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한 전체 요구도는 7.3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취업주부들은 자신의 가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강력하게 바라고 있으며, 특히 그 방법이 자신과 가족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노동이 개별 가정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사적노동이라고 규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문숙재·윤소영, 1997), 취업주부들의 요구대로 가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공적인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각 변인의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12> 참조). 주부의 연령은 지원 영역별 요구도에 영향을 미쳐, 연령이 20-30대인 취업주부들이 사회제도 마련, 공공시설 확충, 시장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한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막내자녀 연령 변인에서도 나타난다. 즉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정내 처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원 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정노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주부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인 주부들이 다른 주부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들은 가정노동 수행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 지원에 대한 요구도 역시 상대적으로

<표 11>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

영역	평균
사회전반의 의식전환	8.19
사회제도 마련	7.96
공공시설 확충	7.94
가정내 해결	6.66
시장상품 및 서비스 이용	5.95
전체	7.38

*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10점 범위로 환산함.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중졸 이하인 주부들은 특히 사회제도나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부의 소득별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소득이 151만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지원 요구도가 높았으며, 특히 전체 영역에서는 151만원 이상집단, 100-150만원 미만집단, 100만원 미만집단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의 직업별로는 가정노동지원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요구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사무직과 전문 기술직/경영관리직 집단이 단순 노동직/고용판매직과 자영업자/자영기술자 집단보다 요구도가 높았다.

예를들어 면접조사에서 파출부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주부(41세)는 사회제도나 시장환경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구체적인 사회제도의 지원을 활용할 의지도 없음을 밝혔다.

사회제도요? 여자들 생리때 휴가도 주고 그런거요? 들어본 적은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일(파출부) 하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파출부한테 혜택주는 제도 보았어요? 우리는 회사 다니는 여자들처럼 확실히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땀땀한 일로 내세우지도 못하잖아요. 만일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 쓰면 어느 세월에 일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편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있어서 소용없어요.

- 41세 주부, 파출부 -

이와같이 교육수준이 낮거나, 단순 노동직, 고용

〈표 12〉 가정환경적 변수에 따른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

변인	구분	가족내 처리		시장상품 및 서비스 이용		사회제도 마련		공공시설 확충		사회전반 의식전환		전 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주부의 연령	20대	33.96		31.66	A	39.70	AB	40.15	A	40.15		186.69	A
	30대	34.08		30.63	AB	40.75	A	41.25	A	41.81		188.99	A
	40대	32.24		28.32	AB	38.73	AB	38.39	A	40.43		179.14	AB
	50대 이상	32.06		27.35	B	36.30	B	34.85	B	38.40		170.28	B
	F	2.50		3.65*		3.08*		6.19***		1.74		4.43***	
주부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1.58	B	27.92	B	38.79		38.33	B	39.24	B	176.00	C
	100 - 150만원	33.04	B	29.34	B	39.83		40.09	AB	41.42	A	184.58	B
	151만원 이상	35.43	A	32.15	A	40.42		40.75	A	41.95	A	192.24	A
	F	9.93***		8.35***		1.29		2.86		3.93*		8.57***	
막내 자녀 연령	만 6세 이하	33.96		30.71		41.27	A	41.42	A	41.91	A	190.04	A
	만 7세 이상	32.84		29.09		38.63	B	38.70	B	40.34	B	180.44	B
	t	2.79		3.91*		11.67***		11.77***		3.98*		10.27**	
주부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1.08	B	27.05	B	35.32	C	35.11	C	38.33	B	169.10	C
	고졸	32.27	B	27.63	B	38.98	B	38.54	B	39.79	B	177.71	B
	전문대졸 이상	35.13	A	32.93	A	41.93	A	42.71	A	43.15	A	196.76	A
	F	11.96***		24.15***		17.26***		25.16***		12.06***		28.55***	
주부의 직업	단순노무직 및 고용판매직	31.65	C	28.15	C	37.97	B	37.87	B	39.01	C	175.68	C
	자영상인 및 자영기술자	33.08	BC	27.84	C	38.36	B	37.91	B	40.22	BC	179.10	C
	사무직	33.98	AB	30.89	B	41.25	A	41.55	A	42.21	AB	189.43	B
	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	35.35	A	33.16	A	42.44	A	43.34	A	43.66	A	198.19	A
	F	6.30***		10.36***		8.62***		13.11***		7.82***		13.42***	

판매직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여성들의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은 가정노동의 문제가 시장환경이나 사회정책의 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기 때문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체계적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2) 가정유형별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

취업주부의 고용상의 위치에 따라 가정노동에 대한 어려움 정도와 지원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알아보기 위해 주부의 직업과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정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부의 직업은 직장까지의 이동, 출퇴근시간의 유동성, 직업의 특

성에 따라 3가지(단순노무직 및 고용판매직, 자영상인 및 자영기술자, 사무직·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 등)로 재분류되었으며, 가정내 어린 자녀의 유무가 취업여성의 직업경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막내자녀의 연령 변수가 채택되었다.

〈표 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노동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가정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요구도 수준이 높은 순서는 어린 자녀가 없는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유형 6), 어린 자녀가 있는 모든 직업의 종사자(유형 3, 4, 5), 그리고 어린 자녀가 없는 노무직 및 고용판매직과 자영업 종사자(유형

〈표 13〉 가정유형별 가정노동 지원 요구도

(기준 : 막내자녀 연령과 주부직업)

유형	빈도(%)	사회전반 의식변화		사회제도 마련		공공시설 확충		가정내 처리		시장상품·서비스 이용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1	113(23.0)	38.63	A	36.84	A	36.99	A	31.11	A	27.68	A	171.80	A
2	97(19.7)	39.66	A	37.33	A	37.28	A	32.53	AB	27.61	A	175.97	AB
3	53(10.8)	39.83	AB	40.41	B	39.77	AB	32.82	AB	29.16	AB	184.36	BC
4	27(5.5)	42.31	AB	41.96	B	40.11	AB	35.00	BC	28.63	AB	189.58	CD
5	121(24.6)	42.74	B	41.48	B	42.44	B	34.21	BC	31.85	BC	192.44	CD
6	81(16.5)	43.79	B	42.61	B	42.79	B	35.61	C	32.73	C	197.51	D

유형 1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없으며 단순 노부직 및 고용판매직에 종사하는 주부

유형 2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없으며 자영업인 및 자영기술자인 주부

유형 3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단순 노부직 및 고용판매직 종사하는 주부

유형 4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자영업인 및 고용판매직에 종사하는 주부

유형 5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사무직, 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주부

유형 6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없으며 사무직, 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주부

1, 2)이다. 어떠한 유형이든지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가정노동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자녀의 유무가 여성의 취업환경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형 6의 경우 어린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원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자녀의 유무 이외에 직업환경적 변수도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낸다.

자영업 종사자와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득면에서 노무·판매직 종사자들보다 여건이 나을 수 있으나, 이들은 육아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특히 사무직이나 전문직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므로 가정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없는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유형 6)의 지원 요구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노부직 및 판매직, 자영업인들의 경우에는 여성중심적인 집단에서 일하거나 가족사업에 종사하지만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들은 남성과 경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가정노동 지원에 대한 요구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유형 6의 경우, 어린자녀는 없지만 여전히 주부는 가정일을 혼자서 담당하고 다른 가족원들을 보살피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다고 여겨진다. 예를들어 면접조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57세의 주부나 44세의 교원아카데미 지부장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남편이나 성인자녀를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애들은 모두 다 커서 출가했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우. 그대신 우리 남편을 챙겨주는 일이 많지. 밥이랑 그외에 것들을 모두 챙겨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외식을 모두 싫어해서 꼭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하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지. 아이들이 아니라 나이들어가는 우리 영감이 문제지...

- 57세 주부, 슈퍼마켓 운영-

남편이 돕나구요? 전혀 안도와줘요. 집에오면 그냥 일만 너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해요. 오히려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집안일은 내가 혼자 다 해요. 나도 피가나서 웬만한 건 시장에서 사다가 먹지요. 외식도 자주하고 사다먹는 음식도 자주 먹어요.

-44세 주부, 교원아카데미 지부장-

위 사례의 주부들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시장환경을 이용하는 정도는 차이나지만, 어린자녀가 없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가정노동에 대한 책임과 가족원 돌보는 일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차 면접조사의 13사례 가운데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8사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주부 가정의 가정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주부들의 실질적인 요구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가정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노동 담당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각 지원방안의 효과를 파악하며, 이를 근거로 우선순위에 맞춘 차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주부들은 시장노동에 참가하는 것 외에 가정노동에 평일 5시간 56분, 휴일 9시간 32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가정노동을 대부분 주부 혼자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취업주부의 가정노동에 대한 지원이 가족원간의 노동분담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주부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노동 영역으로는 식생활부분이었으며, 특히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돌보기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가정노동을 주부 혼자서 수행하며, 남편이나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주부는 항상 '보살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노동에 대한 지원이 집단별로 차별성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6세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대개의 20-30대의 취업주부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자녀를 돌볼 수 있는 탁아시설 및 보육기관과, 기업과 국가 차원의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어린 자녀는 없지만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30-40대 취업주부들은 자신과 남편의 남녀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조정하여 가정일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서 가정노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전반적인 의식 변화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라서도 다른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가 높으며, 지원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모든 가능한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졸이하의 교육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자의 주부들은 정보나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사회제나 공공시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주기 전에 보다 광범위한 홍보활동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취업주부가 겪는 다중역할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된 13명의 주부가 말하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정책수립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취업주부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정책과정을 수립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취업주부의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족원, 특히 남편의 도움을 통한 가정내 지원 방법이다. 남편과의 가정노동의 분담을 통해 자녀는 평등한 성역할 교육을 제공받으며,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일을 나누어 함으로써 가족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시장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지원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절약을 위해 기기사용을 많이 하는 취업주부에게는 A/S의 부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전제품이 좀더 경고해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말이나 휴일에도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이 관공서 이용가능한 시간과 겹쳐있어 관공서나 은행 등의 이용이 제약받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일 처리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가능하게 하고 관공서에 은행의 365일 자동코너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취업한 주부에 대해 기업이나 사회는 몇가

지의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탁아비를 지원하고 세금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육아휴직, 산전산후 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유산 및 조산 휴가등을 인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용범위 확대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이고 보장적인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

넷째, 여성들의 취업과 가정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휴직이나 재취업의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주부가 휴직후 복직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재취업이 보장되고 시간제 근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된다면, 여성의 노동공급유형이 M자 형태에서 \cap 형태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취업주부가 노동부담을 덜 수 있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는 탁아시설이나 학교 급식시설, 그리고 방과후 아이를 돌보는 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믿을 수 있는 환경, 전문가를 갖춘 시설,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와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여섯째, 이러한 모든 외부적인 지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부의 시장노동이나 가사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한 취업주부와 그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의 생활의 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취업주부들의 다중역할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취업여성의 가정보담에 대한 부담을 가정내 해결을 통해서 하려고만 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계속 겪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성차별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역할의 평등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을 일 자체의 개념보다는 성차별적인 고용을 하는 불평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취업주부들이 직장 근무중에 자녀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취업여성의 복리차원에서라도 질 높은 자녀보육시설의 확대와 보급이 시급히 요청된다.

■ 참고문헌

- 1) 강남식, 안혜성(1993), 모성보호의 실태와 대안, 여성노동의 현실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 2)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1994-1996.
- 3) 공미혜(1994), "과연 남성은 변하고 있는가? -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의식변화와 참여", 여성연구(부산여자대학교) 5집, 123-141.
- 4)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 5) 국가안전기획부(1997), 21세기 국가발전과 여성의 역할.
- 6)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평등·참여·복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한국여성개발원) 47호, 87-112.
- 7)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중대(1996), "직장 보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인감, 1996.
- 11) 두경자(1992),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한, 미, 일 비교.
- 12) 문숙재, 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13) 박숙자(1995), 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연세여성연구.
- 14)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5) 양세정, 이성민(1992), 가계소비지출 및 저축행태분석을 통한 건전가계경제구조 창출방안, 국민가계경제연구소.
- 16) 양승주(1996),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행태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8(1), 63-87.

- 17) 윤소영(1998).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8) 이기영, 강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19)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20) 이현송 외 4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1) 임선희(1995). "우리 나라 학교급식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발전논집 16(1), 61-79.
- 22)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정진희, 이정우(1991). "도시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9(2), 119-135.
- 25) 정혜선(1994). 모성보호정책의 현실과 대안.
- 26) 체미경(1993).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8)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1995.
- 29)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의 재취업구조와 특성.
- 3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7.
- 31)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